

1. 개정이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요원의 교육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가 중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처분 차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요원 교육 유효기간 명확화 및 자격 확대(안 제16조의2 개정)

-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요원 자격기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교육 유효기간 명확화
-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요원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자격 확대

나. 안전검사기관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안전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 보호

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8시간”을 “최근 2년 이내 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설치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관리주체 성명	시설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설치 현황	설치장소 (시행령 별표 2 중 선택)	민간/ 공공구분	실내/실외 구분	설치면적 (㎡)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	설치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치자(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귀하

불입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설치자(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 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u>8시간</u> 이상 이수한 사람	4. ----- ----- ----- ----- <u>최근 2년 이내 8시간</u> ---
<u><신 설></u>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u><신 설></u>	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